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확인

1.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제2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발표서비스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0. 11. 4.(수) 09:00부터 60일 간
- 합격자 전체명단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2020. 11. 4.(수) 09:00부터 4일 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시행현황

- 시험일자 : 2020. 8. 15.(토) ~ 8. 16.(일)
- 시행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6개 기관]
- 시험장소 : 용산공업고등학교 등 13개 시험장
- 합격자 발표일시 : 2020. 11. 4.(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불합격 여부, 총득점 등
- 합격자 결정기준

<p>■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 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 $\{(\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 50$ 2.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2 \text{의 총합계}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3. 채점결과

(단위: 명)

대 상	응 시	합격인원	합격률(%)	선택과목별 합격인원
4,386	3,871	343	8.86	경영조직론 : 219 노동경제학 : 80 민사소송법 : 44

2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채점 통계

1. 시행현황

(단위 : 명,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격	합격률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4,386	3,871	515	88.26	343	8.86

2. 선택과목별 채점결과

(단위 : 명, 점)

구 분	응시자수	합격자수	전체 평균점수	합격자 평균점수
경영조직론	2,154	219	50.00	62.65
노동경제학	589	80	49.99	60.64
민사소송법	802	44	49.93	61.67

3. 합격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만 나이 기준)

합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343	231	100	11	1

4. 합격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남 성	여 성
343	146	197